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29호 2014. 10. 17.(금)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69호(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70호(공 인 등 록 공 고) 7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74호(공 인 등 록 공 고) 9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78호(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지 속 가 능 발 전 조 례 제 정 (안) 입 법 예 고) 10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82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17

【회 보】

- 주식매각 공개 목록 21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 - 869호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연수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창단이래 문화사절단으로서 봉사해 온 구립예술단(관악단, 풍물단, 합창단)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여건 마련
- 지역내 문화사절단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원의 연령제한 조항을 상향 조정하고 구립예술단원의 수당증액 및 신설을 통해 운영활성화 모색
- 구립예술단의 실력향상과 문화예술도시의 기반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 개정 주요내용

- 여성합창단원의 연령조정
 -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 만 55세 → 만 60세 (개정)

- [별지] 별지 및 별표 (개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4년11월3일 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032-749-7291, FAX 032-749-7289, 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건의,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 “55” 을 “60” 으로 한다
〔별표1〕 , 〔별표2〕 ,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1.(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여성합창단 단원 :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여성.다만,결격 사유가 없는 한 만 55세까지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지휘자에 한하여 만 60세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	2.여성합창단 단원 : ----- ----- -----60 ----- -----																																											
3.(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u>〔별표1〕 예능수당</u>	<u>〔별표1〕 예능수당</u>																																											
(단위:원)	(단위:원)																																											
<table><tr><th>구 분</th><th>예능수당</th><th>비 고</th></tr><tr><td>관악단원</td><td>24,000</td><td>1회당예능수당</td></tr><tr><td>풍물단원</td><td>20,000</td><td>1회당예능수당</td></tr></table>	구 분	예능수당	비 고	관악단원	24,000	1회당예능수당	풍물단원	20,000	1회당예능수당	<table><tr><th>구 분</th><th>예능수당</th><th>비 고</th></tr><tr><td>관악단원</td><td>30,000</td><td>1회당예능수당</td></tr><tr><td>풍물단원</td><td>30,000</td><td>1회당예능수당</td></tr></table>	구 분	예능수당	비 고	관악단원	30,000	1회당예능수당	풍물단원	30,000	1회당예능수당																									
구 분	예능수당	비 고																																										
관악단원	24,000	1회당예능수당																																										
풍물단원	20,000	1회당예능수당																																										
구 분	예능수당	비 고																																										
관악단원	30,000	1회당예능수당																																										
풍물단원	30,000	1회당예능수당																																										
<u>〔별표2〕 공연수당</u>	<u>〔별표2〕 공연수당</u>																																											
(단위:원)	(단위:원)																																											
<table><tr><th>구 분</th><th>정기공연</th><th>수시공연</th><th>비 고</th></tr><tr><td>관 악 단원</td><td>115,000</td><td>92,000</td><td>개인지급</td></tr><tr><td>여성합창단</td><td>500,000</td><td></td><td>단체지급</td></tr><tr><td>풍 물 단원</td><td>115,000</td><td>92,000</td><td>개인지급</td></tr><tr><td>객원출연자</td><td>230,000</td><td>184,000</td><td>개인지급</td></tr></table>	구 분	정기공연	수시공연	비 고	관 악 단원	115,000	92,000	개인지급	여성합창단	500,000		단체지급	풍 물 단원	115,000	92,000	개인지급	객원출연자	230,000	184,000	개인지급	<table><tr><th>구 분</th><th>정기공연</th><th>수시공연</th><th>비 고</th></tr><tr><td>관악단원</td><td>130,000</td><td>110,000</td><td>개인지급</td></tr><tr><td rowspan="2">여성합창단</td><td>700,000</td><td>500,000</td><td>단체지급</td></tr><tr><td>130,000</td><td>-</td><td>개인지급</td></tr><tr><td>풍 물 단원</td><td>130,000</td><td>110,000</td><td>개인지급</td></tr><tr><td>객원출연자</td><td>230,000</td><td>184,000</td><td>개인지급</td></tr></table>	구 분	정기공연	수시공연	비 고	관악단원	130,000	110,000	개인지급	여성합창단	700,000	500,000	단체지급	130,000	-	개인지급	풍 물 단원	130,000	110,000	개인지급	객원출연자	230,000	184,000	개인지급
구 분	정기공연	수시공연	비 고																																									
관 악 단원	115,000	92,000	개인지급																																									
여성합창단	500,000		단체지급																																									
풍 물 단원	115,000	92,000	개인지급																																									
객원출연자	230,000	184,000	개인지급																																									
구 분	정기공연	수시공연	비 고																																									
관악단원	130,000	110,000	개인지급																																									
여성합창단	700,000	500,000	단체지급																																									
	130,000	-	개인지급																																									
풍 물 단원	130,000	110,000	개인지급																																									
객원출연자	230,000	184,000	개인지급																																									

※ 공연수당은 1회당 지급액임

[별표3] 직책수당

(단위: 원)

구 분	직 책	직책수당	비 고
관 악 단	지휘자	1,100,000	
	부지휘자	300,000	
	악 장	200,000	
	총 무	200,000	
	악기악보계	100,000	
합 창 단	지 휘 자	1,100,000	
	반 주 자	733,000	
풍 물 단	예술감독	1,100,000	

※ 직책수당은 월정액임

※ 공연수당은 1회당 지급액임

[별표2] 직책수당

(단위: 원)

구 분	직 책	직책수당	비 고
관 악 단	지휘자	1,150,000	
	부지휘자	360,000	
	악 장	240,000	
	총 무	240,000	
	악기악보계	120,000	
합 창 단	지 휘 자	1,150,000	
	반 주 자	800,000	
풍 물 단	예술감독	1,150,000	

※ 직책수당은 월정액임

검 토 의 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부패영향평가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인 등 록 공 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인 등록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송도2동)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14. 10. 10
3. 공인명 및 인영

□ 신조공인 목록

공인명	인영규격	인 영	수량	제작사유	등록기준일
송도2동장인 통합민원전용4(가로)	2.1cm×2.1 cm		1	○통합민원 발급기설치	사용개시일 2014. 10. .10일
송도2동장인 통합민원전용4(세로)	2.1cm×2.1 cm		1	○통합민원 발급기설치	사용개시일 2014. 10 .1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장의인송도2동통합 민원4(가로)	2.4cm×2.4 cm		1	○통합민원 발급기설치	사용개시일 2014. 10 .1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장의인송도2동통합 민원4(세로)	2.4cm×2.4 cm		1	○통합민원 발급기설치	사용개시일 2014. 10 .10일

공 인 등 록 공 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인 등록 사유 :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설치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14. 10. 16
3. 공인명 및 인영

□ 신조공인 목록

공인명	인영규격	인 영	수량	제작사유	등록기준일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장인	3.6cm×3.6 cm		1	인천광역시 연수구도시 건축공동위 원회설치	사용개시일 2014. 10. .16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정사유

- 가. 연수구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 나. 지속가능발전 평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가. 연수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
-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지속가능성 평가
- 다. 연수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사업
- 라. 연수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임기, 회의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749-7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911, FAX 749-7899(sonamu12@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이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경제·사회·환경등의 자원을 보전하고 서로 조화된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정책을 추진한다.

④ 구는 기업, 주민, 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4조(지속가능성평가 등) ① 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구는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지속가능한 평가대상선정,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기능 및 사업)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구청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실천과정 점검 및 성과분석·평가
 4.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유대사업 추진
 5.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3명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지속가능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당연직위원 1명과 주민을 대표하는 위촉위원 1명, 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위원 1명으로 한다.

④ 당연직 공동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회장을 상임공동회장으로 한다.

⑤ 상임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⑥ 상임공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임기) ①구청장을 제외한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에 장기불참(연속3회)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상임공동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상임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구)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정책위원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사무국

제11조(총회) 총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촉직 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30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공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은 각 국, 소장 및 단장, 실장, 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정책위원은 구의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등 구청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공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공동회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의 심의·의결
5.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지속가능발전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실천과정 점검 및 성과분석·평가
4.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유대사업 추진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회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한 사안의 처리
2.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하며, 협의회의 업무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
3.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지원
4.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7조(자문위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협의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협의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공청회 등) 협의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국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구의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의 실정에 맞게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2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환경보전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4 - 82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며 적법한 광고문화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

정비시범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42, 40번길 5, 40번길 7, 40번길 11, 40번길 21, 40번길 25, 40번길 29, 40번길 35, 40번길 39, 40번길 43, 40번길 47,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23
2. 구 역 : 별도도면 표기구역【별표1】

제3조(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가로간판과 돌출간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약국은 가로형 간판 이외에 1면의 면적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소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은 싸인볼을 세로20cm 이하, 둘레15cm 이하의 규격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광고물의 바탕색을 원색으로 표시할 경우, 그 표시 비율이 전체바탕색의 50%이하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단, 기업의 C.I 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광고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 방식과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을 권장하며, 점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⑤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 할 수 있고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권장하며 한글이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저속한 광고물은 표시 할 수 없다.

제4조(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 정면 1층에는 가로형 간판을 파사드를 이용한 입체형의 모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층이상 5층까지는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간판에 표시되는 주된 문자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1층을 50cm 이내로 하고 1층 증가시마다 5cm씩 증가하여 최대 120cm 크기 이내로 한다. 또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업소폭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을 5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6층이상에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구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4. 건물의 6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3면 중 한 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면의

업소명은 달리할 수 있다.

②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1.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간판규격은 가로 최대 80cm 이하 (게시판 포함100cm), 세로 100cm, 두께 30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을 금지한다

④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제5조(광고물실명제)

광고물시범거리안에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지역내 많은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 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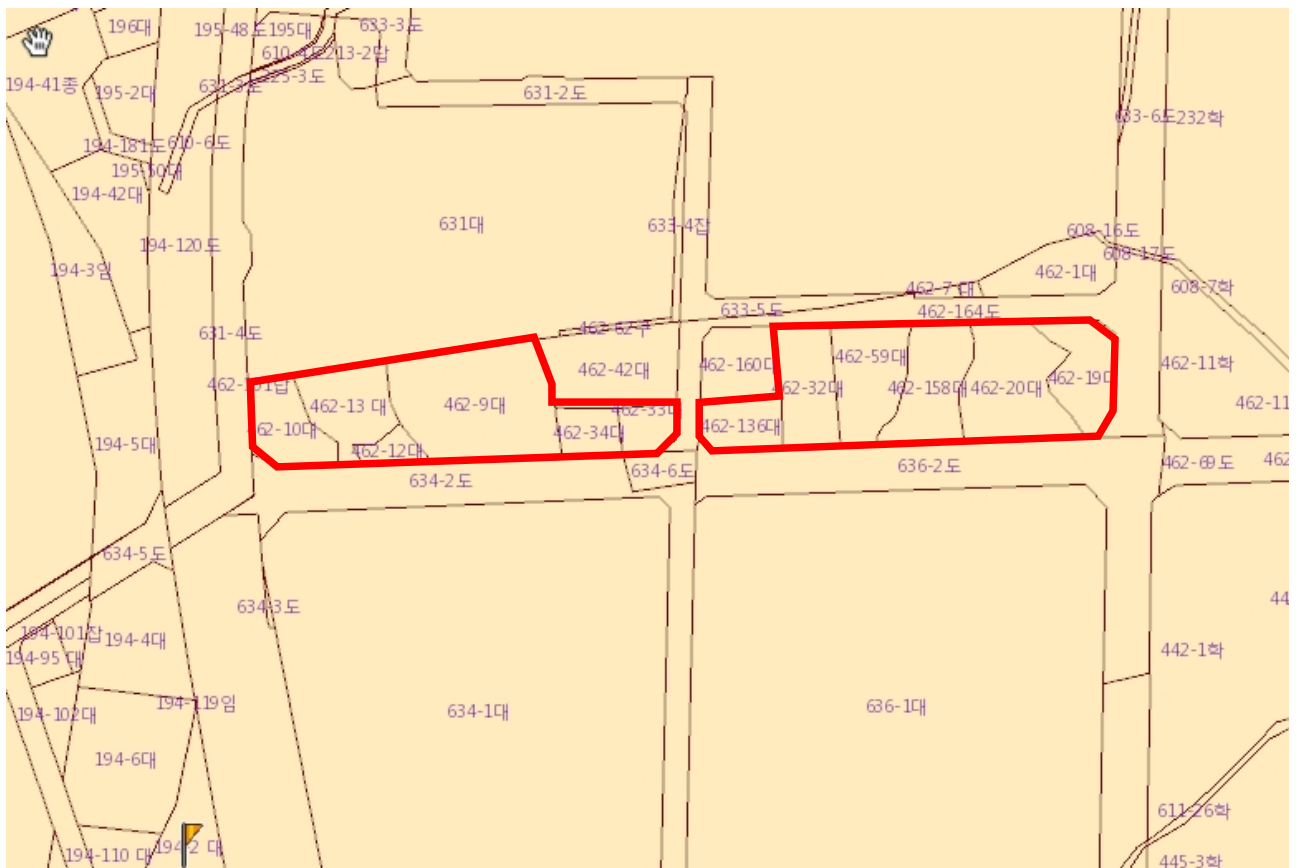
【별표1】

정비시범구역 지정현황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 사업대상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42, 40번길 5, 40번길 7, 40번길 11, 40번길 21, 40번길 25, 40번길 29, 40번길 35, 40번길 39, 40번길 43, 40번길 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23



주식 [[0] 매각 [] 백지신탁]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수연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의원	이 강 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인 성명	이 강 구	32,000	매각	196,704,000 65,527,000 65,527,000 65,649,960	2014.9.18 2014.9.18 2014.9.18 2014.9.18	(주)조은디앤에스 이 남경 이 경순 임 한영
	셀트리온	1,210	매각	50,638,500	2014.10.17	대우증권 이성구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0 월 17 일

신고의무자

이 강 구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장관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4.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적으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m²)